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합569192 판결 [구상금 및 손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8. 3. 29.

판결 선고 2018. 4.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486,338원 및 그중 245,560,028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8. 14.부터 2017. 12. 2.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피고 B, D은 2017. 8. 14.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피고 C은 2017. 8. 14.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나주시 F 임야 78744m²에 관하여,

가. 피고 E와 피고 B 사이에 2017. 5.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7. 5. 30. 접수 제17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운>일반자금대출금 3억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이후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5. 10. 5.(이후 2017. 10. 2.까지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G,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때에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 C, D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권리보전 비용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등록을 이유로 2017. 4. 13. 부실처리되었고, 신한은행이 2017. 5. 15.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8. 14. 신한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원리금 245,742,8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회수금 182,818원을 변제충당하였고 그 확정손해금은 50원이며 위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1,926,260원을 지출하였고 2016. 2. 1.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7. 5. 10. 그 소유의 나주시 F 임야 7874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누나인 피고 E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이에 기하여 2017. 5.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718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피고 E 앞으로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A, B,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47,486,338원[= 대위변제금 잔액 245,560,028원(대위변제금 245,742,846원 - 회수금 182,818원) + 확정손해금 50원 + 법적 절차비용 1,926,26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245,560,028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대위변제일인 2017.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7. 12. 2.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피고 B, D은 위 2017.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7. 10.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피고 C은 위 2017.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7. 11. 8.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7. 5. 10.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실제로 성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4. 10.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직전인 2017. 4. 13. 피고 회사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부실처리되는 등 이미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연대보증인인 피고 B로서는 위 구상금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7. 8. 14.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마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7. 5. 10.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어서는 채무초과 상태라고 할 것이다.

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7. 5. 10. 당시 이 사건 임야 및 나주시 H 답, I 답, J답, K답, L 전, M 전, N 대, O 답, P답, Q 답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위 임야, 전, 답의 개별지가 합산액은 73,822,434원인데, 한편 이 사건 임야는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위 가액 합계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빅빔,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설정일 2016. 6. 20.)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참조).

나) 피고 B은 위 2017. 5. 10. 당시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이었을 뿐 아니라 합계 74,024,000원의 금융채무(=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대출채무 8,000,000원 +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9,712,000원 + 롯데카드에 대한 대출채무 1,826,000원 + 신한카드에 대한 대출채무 20,180,000원 + 현대캐피탈에 대한 보증채무 867,000원 + 신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2,200,000원 +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대한

보증채무 292,000원 +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0,947,000원)와 피고 E에 대한 6,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B이 피고 E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E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3) 피고 E는, 2015년경 동생인 피고 B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6,5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임야에 물상담보가 되어 있어 당장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으니 우선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마쳐 두었을 뿐 이로써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 E는 피고 B의 누나인 점, 피고 E가 피고 B에게 빌려준 6,500만 원의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그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마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가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E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김지나

판사김근홍